

최신개정판 <2020 해커스 국제무역사 1급 이론+적중문제> 2쇄 오타정정노트

(2020. 07. 15. 업데이트)

| 페이지 | 수정 부분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일 | | | | | | |
|------------------------|---|---|------------|---|---|--|------------|---|-----------|
| <1편 무역계약> | | | | | | | | | |
| p.44 | ②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 | <table border="1"> <tr> <td>양륙품질조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DAT, DAP, DDP 및 GMQ, RT 등이 양륙품질조건에 해당한다.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양륙품질조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DPU, DAP, DDP 및 GMQ, RT 등이 양륙품질조건에 해당한다. </td> </tr> </table> | 양륙품질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DAT, DAP, DDP 및 GMQ, RT 등이 양륙품질조건에 해당한다. | → | | 양륙품질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DPU, DAP, DDP 및 GMQ, RT 등이 양륙품질조건에 해당한다. | 20.02.26. |
| 양륙품질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DAT, DAP, DDP 및 GMQ, RT 등이 양륙품질조건에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양륙품질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DPU, DAP, DDP 및 GMQ, RT 등이 양륙품질조건에 해당한다. | | | | | | | | |
| p.72 | (5) 양하비용 | <p>DPU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 . 그러나 C 규칙과 DAP, DDP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목적지·인도장소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시킨 경우에 매도인은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p> <p>→</p> <p>DPU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 . 그러나 C 규칙과 DAP, DDP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지·인도장소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p> | 20.05.22. | | | | | | |
| p.74 | 3. 위험의 이전(A3/B3 : Transfer of Risks)_표 | <table border="1"> <tr> <td>CFR CIF</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CFR CIF</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선적기일이나 선적기간의 만료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td> </tr> </table> | CFR CI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 | | CFR CI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선적기일이나 선적기간의 만료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20.02.26. |
| CFR CI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CFR CI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선적기일이나 선적기간의 만료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 | | | | | | |

<3편> 무역규범

| | | | | | | | | | |
|-----------|--|---|-----------|--|---|--|-----------|--|-----------|
| p.429 | 3. 특별납세의무자_ (1) _ 틀리기 쉬운 빈출포인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세운송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 •보세운송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p>(빨간색 글자 추가)</p> | 20.02.26. | | | | | | |
| p.446 | (2) 조건부 감면_표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재수출감면세</td> <td>• 일반적인 물품은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수출감면세</td> <td>• 일반적인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td> </tr> </table> | 재수출감면세 | • 일반적인 물품은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 | → | | 재수출감면세 | • 일반적인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 | 20.03.05. |
| 재수출감면세 | • 일반적인 물품은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 | | | | | | | | |
| → | | | | | | | | | |
| 재수출감면세 | • 일반적인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 | | | | | | | | |
| p.450 | 01 보세구역의 개요 | 7. 견본품 반품 → 7. 견본품 반출 | 20.05.22. | | | | | | |
| p.451 | 2._(2) 세관검사장 | ②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 ②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단, 국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법령의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0.02.26. | | | | | | |
| p.452 | 4. 보세판매장_ (3) 보세판매장의 관리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보세판매장 운영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는 물품총액 미화 3,000 달러 이하 이내로 판매해야 하며, ~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세판매장 운영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는 물품총액 미화 5,000 달러 이하 이내로 판매해야 하며, ~ </td> </tr> </table> <p>(해당 내용은 법개정으로 정정되었습니다.)</p> | 보세판매장 운영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는 물품총액 미화 3,000 달러 이하 이내로 판매해야 하며, ~ | → | | 보세판매장 운영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는 물품총액 미화 5,000 달러 이하 이내로 판매해야 하며, ~ | 20.02.26. |
| 보세판매장 운영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는 물품총액 미화 3,000 달러 이하 이내로 판매해야 하며, ~ | | | | | | | | |
| → | | | | | | | | | |
| 보세판매장 운영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는 물품총액 미화 5,000 달러 이하 이내로 판매해야 하며, ~ | | | | | | | | |
| | 4. 보세판매장 _ (4) 추가 | (3) 보세판매장의 관리 (4)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 20.02.26. | | | | | | |

| | | | | | | | | | |
|------------------------------------|--|--|-----------------------|--|---|--|------------------------------------|--|-----------|
| | 01_1. 관세환급의 의의 | <p>관세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에 의해 ~</p> <p>→ 관세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에 의해 ~ (빨간색 글자 삭제)</p> | 20.02.26. | | | | | | |
| p.464 | 02 관세법상 환급_표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e0f0ff;">관세환급금의 환급 (과오납 환급)</td> <td>•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ff;">관세환급금의 환급 (과오납 환급)</td> <td>•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td> </tr> </table> <p>(빨간색 글자 삭제)</p> | 관세환급금의 환급 (과오납 환급) | •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 | → | | 관세환급금의 환급 (과오납 환급) | •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 | 20.02.26. |
| 관세환급금의 환급 (과오납 환급) | •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관세환급금의 환급 (과오납 환급) | •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 | | | | | | | | |
| p.464 | 02 관세법상 환급_표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e0f0ff;">종합보세구역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td> <td>•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ff;">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 또는 -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td> </tr> </table> <p>(해당 내용은 법개정으로 정정되었습니다.)</p> | 종합보세구역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 •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 |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 또는 -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20.02.26. |
| 종합보세구역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 •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 또는 -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 | | | | | | |
| p.532 | 적중 실전테스트_ 23 번 문제_디렉션, 보기 ㉔ | <p>23. 관세법상의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㉔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미납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p> <p>→</p> <p>23. 관세법상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㉔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p> | 20.07.15. | | | | | | |
| <시크릿노트> | | | | | | | | | |
| p.28 | 잠깐! 이것만은 알고가자 | <p>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어도 수출자나 수출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제공되는 것은 인정범위에 속하지 않아요!</p> <p>(빨간색 글자 삭제)</p> | 20.07.15 | | | | | | |

<실전모의고사>

| | | | |
|-------------|-------------------|---|------------------|
| <p>p.7</p> | <p>24 번 문제 전체</p> | <p>24. 다음의 ()에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A)(으)로 징수한다.</p> <p>1. 부족세액의 (B). 단,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C)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 일 (D)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E)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p> <p>① 가산세 - 100 분의 3 - 100 분의 40 - 10 만분의 25 - 100 분의 10 ② 가산세 - 100 분의 10 - 100 분의 40 - 10 만분의 25 - 100 분의 3 ③ 과징금 - 100 분의 10 - 100 분의 30 - 1 만분의 75 - 100 분의 3 ④ 과징금 - 100 분의 3 - 100 분의 30 - 1 만분의 75 - 100 분의 10 (해당 내용은 법개정으로 정정되었습니다.)</p> | <p>20.07.15.</p> |
| <p>p.43</p> | <p>24 번 해설</p> | <p>24. 각각 관세법상 가산금과 증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 24. 관세법상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법개정으로 정정되었습니다.)</p> | <p>20.07.15.</p> |